

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. 5. 9 선고 2018가단157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]

전 문

원고비케이에셋대부 주식회사

피고A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8. 5. 9.

주 문

1.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태백등기소 2003. 1. 3. 접수 제10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(무변론 판결)

판사주은영

별지